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9. 5 선고 2022가단559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드보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오치원, 이준현, 오지현, 안주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다훈, 윤승환, 김승환

변 론 종 결 2023. 8. 22.

판 결 선 고 2023. 9. 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2. 1.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2585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4.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0,792,3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2. 1.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C, E, F, G이 있으며, C의 상속지분은 2/11이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2. 1. 26.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22. 3. 18. 접수 제58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지분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C이 망인으로부터 3,860만 원을 증여받은 초과특별수익자로 C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한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기여분 등이 반영되어 법정상속분이 수정된 것)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선중

【별지】

부동산 목록

1. 전라남도 고흥군 대 754㎡
2. 전라남도 고흥군 전 732㎡
3. 전라남도 고흥군 전 1415㎡
4. 전라남도 고흥군 전 587㎡
5. 전라남도 고흥군 전 496㎡
6. 전라남도 고흥군 답 152㎡
7. 전라남도 고흥군 임야 316㎡
8. 전라남도 고흥군 도로 498㎡ 끝. 끝.

